

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. 11. 18.

담양군의회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제안이유

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군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,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(안 제3조 제①항)

-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⇒ 10세대 이상 공동주택

나. 사용검사 등 경과연수와 상관없이 지원 조항 신설(안 제3조 제④항)

다. 보조금 지원 상한액 증액(안 제7조 제④항)

- 사업별 지원 상한액 4천만원 ⇒ 5천만원

라. 보조금 지원범위(자부담 비율) 조정(안 제7조 제④항)

-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~95% 범위 안에서 세대수에 따라 지원
 - 10세대 이상~50세대 미만 : 95%
 - 50세대 이상~200세대 미만 : 90%
 - 200세대 이상~300세대 미만 : 80%
 - 300세대 이상 : 70%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11. 18. ~ 11. 23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o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

1. 조례안

관련조문

의견

2. 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20세대이상”을 “10세대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구조적 문제 등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과 연수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구조적 문제,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
2.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
제7조제4항 본문 중 “70%”를 “70~95%”로, “지원함”을 “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함”으로, “4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만, 150세대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90%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”를 “다만,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10세대 이상~50세대 미만 : 95%
2. 50세대 이상~200세대 미만 : 90%
3. 200세대 이상~300세대 미만 : 80%
4. 300세대 이상 : 70%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적용범위) ①법 제8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「주택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건축법」에 따라 군 지역에 건설된 <u>20세대이상</u> 공동주택(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) 중 전년도말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한다. 단,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세대이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구조적 문제 등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과 연수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구조적 문제,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2.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
제7조(지원결정 및 정산) ① ~ ③ (생 략) 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<u>70%</u> 범위 안에서 <u>지원합</u>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별 지원상한액은 <u>4천만원</u>으로 한다. <u>다만, 150세대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90%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</u>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인 단지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아니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⑤ ~ ⑪ (생 략)	제7조(지원결정 및 정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70~95%</u> ----- <u>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합</u>----- <u>5천만원</u>----- . <u>다만,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<u>10세대 이상~50세대 미만 : 95%</u> 2. <u>50세대 이상~200세대 미만 : 90%</u> 3. <u>200세대 이상~300세대 미만 : 80%</u> 4. <u>300세대 이상 : 70%</u> ⑤ ~ ⑪ (현행과 같음)
---	---